

창원지방법원 2021. 8. 27 선고 2020나5837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8. 27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가소5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9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(이하 '이 사건 개발행위'라 한다)를 추진하였던 사람이고, 피고는 주식회사 D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이사이다.

나. 원고는 2014. 5.경 피고와 이 사건 개발행위 관련 용역계약(이하 '이 사건 용역계약'이라 한다)을 구두로 체결하였다.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,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견적서

수신 원고 사장님 귀하

건명 함안군 C 일원에 개발행위 설계용역

견적금액 일금 일천오백만 원정(₩15,000,000) VAT 별도

□ 견적내역서

1. 설계용역

-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3,000,000원
- 개발행위협의서류 4,000,000원
- 농지전용협의서류 3,000,000원
- 토목설계도서작성 5,000,000원

=====

1. 견적에 대한 일반사항

1-1. 견적 개요: 개발행위 승인에 따른 설계 도서작성 용역입니다.

1-2. 설계용역 기간: 계약일로부터 3개월

1-3. 설계용역 장소: C

1-4. 대금지불방법(현금)

1) 계약금 50%(계약시) 2) 중도금 0%(기본설계 및 인 허가서류 접수 시)

3) 잔금 50%(인 허가시)

2. 설계사양

2-1. 농지전용에 따른 설계서작성 및 인 허가

2-2. 토목 기본설계서 작성

2-3. 건축설계 및 준공은 별도임

2-4.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설계는 별도임

2-5.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임

다. 원고는 2014. 5. 29. 주식회사 E(이하 'E'이라고만 한다)과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한 기본설계도서 및 환경성조사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피고는 E 측 F와 협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4. 6. 27.경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토목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, 2014. 7. 18. F로부터 수정을 요청받고 이를 수정하여 F에게 다시 송부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4. 9. 18.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, 을 제1, 2, 5, 7호증(원고는 을 제1호증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, 그 문서의 형태 및 내용, 작성명의자인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의 관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 그런데 ① 이 사건 개발행위 대상 토지는 애초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를 위한 토목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

내용으로 하고,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 원고의 역할이다.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
가능여부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여부는 관련이 없고, 피고는 토목서류 등을 작성한 후 F에게 그
결과물을 전달함으로써 용역수행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.

나.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
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,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
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
받아주는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가) 이 사건 견적서의 '견적내역서'에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 내용은
현황측량과 지장물 조사를 거쳐 토목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와
개발행위협의서류농지전용협의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개발행위의
허가를 받아내는 업무에 관한 기재는 없다.

나)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E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기본설계도서와
환경성조사서의 작성 등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용역대금을 5,000만 원으로 정하여
서면으로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, 이 사건 개발행위 자체의 허가를 받아내기로 하는 중요한
내용의 용역계약을 용역대금도 명시하지 않은 채(이 사건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과 비교하여
용역대금이 30%에 불과하다)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.

다) 피고가 2014. 7. 18.경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토목설계도서 수정본을 송부한
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원고는 2014. 9. 19.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 토목설계도서를
바탕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및 환경성조사서를 작성제출하였다가, 2014. 10. 6. 원고의 회사
사정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을 철회하였는데,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
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.

2)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애초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이
사건 용역계약에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는 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

개발행위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과 관련이 없고, 원고는 피고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을 해제할 수 없다(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, 그러한 조건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).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양상익, 판사 전보경, 판사 김희수